

충남인권기본조례의

[] 제정

[] 개정

[0] 폐지

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안준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전화번호: 2012)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충청남도 충남 인권기본조례 ([]제정 []개정 [0]폐지)
-------------------	---

이유	충남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인권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권 목록이 2014년에 만들어진 충남도민선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1조(차별금지)에는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다양한 가족형태, 사상, 전과 차별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선언 제17조(이주민)는 외국인의 이슬람 문화를 도청이 보장할 책무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유럽의 무슬림 증가에 의한 테러, 범죄 사건의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정을 생각해보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의 정교분리 위배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권 조례가 목표로 삼을 권리 목록을 도청은 도의회의 승인없이 공표했는데, 당일에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본인들도 쟁끄러워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0]신청 []필요없음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0]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2022년 8 월 22 일

청구인 안준호

안 준 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 주소는 도로명 주소 또는 법정동까지만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는 끝 번호 네 자리만 기재합니다.

<별지>

충청남도 인권 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1. 인권 조례를 만들도록 하는 상위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예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인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 연구] 용역보고서에서도 확인하고 있으며(p.19),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에 보낸 『인권 조례 제·개정 권고』의 부록에 있는 <표준 인권 조례 해설서>에서도 ‘인권 조례는 국가인권위원법에서 위임하는 조례가 아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충청남도의 인권사무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법률도 없이** 인권에 관한 사업과 조직, 시민단체 지원을 위해 도의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3. 충남인권조례 제2조(정의)는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규범을 인권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정부나 법원도 국제조약이나 규범을 취사선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례가 법률을 초월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4. 충남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인권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권 목록이 2014년에 만들어진 충남도민선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1조(차별금지)에는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 다양한 가족형태 · 사상 · 전과 차별금지”**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선언 제17조(이주민)는 **외국인의 이슬람 문화를 도청이 보장**할 책무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유럽의 무슬림 증가에 의한 테러·범죄 사건의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정을 생각해보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의 정교분리 위배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권 조례가 목표로 삼을 권리 목록을 도청은 도의회의 승인없이 공표했는데, 당일에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본인들도 결끄러워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5. 충남인권조례 근거하여 2014년에 만든 「충남인권기본계획」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의 지역적 반영을 목표로 제시했는데(p.19), 국가인권위원회의 동계획에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규정 명문화, 성소수자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성적 지향에 대한 청소년상담원등의 의무 교육, 군인 동성애자의 인권보호 방안”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6. 충남 인권 조례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공무원과 도민들에게 교육시키키며,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제5조, 제6조), 감시·고발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게 하고(제10조), 도의 정책을 좌우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제16조), 이 모든 계획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조사하는 집행기구로 인권센터를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7~27조)

7. 범죄가 증가한다고 해서 지자체가 조례로 경찰, 검찰, 법원을 만들지 못합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입니다. 지방경찰청, 지방검찰청, 지방법원의 역량 강화를 촉구할 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충청남도의 인권 업무를 대전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고, 인권 조례를 만들라는 위임법률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사무를 충남도청이 중복적으로 추진하며, 잘못된 인권 개념으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제약하게 되는 충남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